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내 수 면 가 두 리 양 식 어 업 면 허 기 간
연 장 불 허 에 따 른 손 실 보 상 에 관 한
특 별 법 시 행 규 칙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제정 이유

'89년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에 대한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 「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, 피해어업인 단체의 신고 및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(제1조)

- 동 규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

나.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(제2조)

-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함

다. 피해어업인 단체의 구성 및 신고(제3조)

-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신고의 절차·방법을 규정함

라. 신청인의 동의 및 보상금 지급(제4조 ~ 제5조)

-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규정
-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하도록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 전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태조사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어업의 종류, 면허번호 및 어업권자의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·주소·생년월일
2. 해당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
3. 처분사항과 그 날짜
4. 손실의 내용
5. 그밖에 대책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

② 대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3조(피해어업인단체의 구성 및 신고) ① 피해어업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,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1개 시·군·구에 속한 어업인들의 피해어업인단체 및 피해어업인단체의 연합체 :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
2. 2개 이상의 시·군·구에 속한 어업인들의 피해어업인단체 : 다수의 피해어업인이 속해 있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3. 시·군별 피해어업인 연합체를 단일화한 도단위 연합체 : 해당 도지사.
다만, 피해어업인의 연합체를 단일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어업인이 속해 있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4. 도별 피해어업인 연합체를 단일화한 전국단위 연합체 : 해양수산부장관.
다만, 피해어업인의 연합체를 단일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시·군이 속해 있는 도지사

② 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 신고를 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(신고증명서를 교부한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도지사는 즉시 신고내용 및 신고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)

제4조(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) 보상금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동의 및 청구서에 인감증명서(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) 및 신청인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

을 첨부하여 대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상금의 지급) ①대책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급하되, 그 실무는 국고(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)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제4조에 따른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 않아도 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피해어업인단체의 명칭		구성원의 수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
(전화번호:)		
대 표 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
	주 소	(전화번호:)
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		

「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고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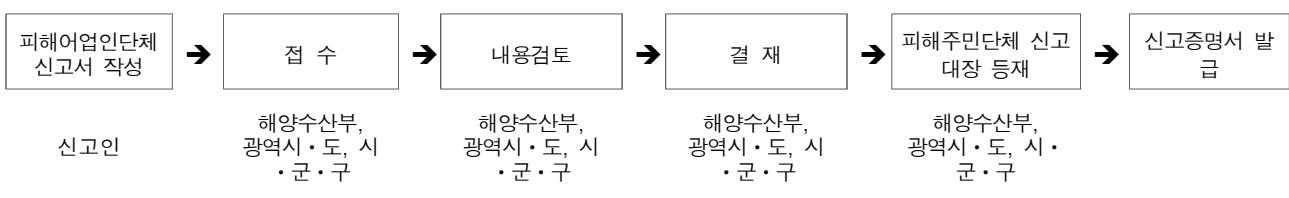
대표자

(서명 또는 날인)

해 양 수 산 부 장 관
광 역 시 장 · 도 지 사 귀하
시 장 · 군 수 · 구 청 장

첨부서류	1.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. 구성원 명부 3. 운영규정	수수료
		없음

처리절차



제 호		
피해어업인단체 신고증명서		
피해어업인단체의 명칭		
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	
신고 연월일		
대 표 자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
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		
「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어업인단체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광역시장 · 도지사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직인		

보상금 지급 동의 및 청구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:	접수일:	처리기간: 30일
-------	------	-----------

- 신청인은 「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고, 보상금을 받고자 합니다.
- 신청인은 보상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하여 국가와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합니다.

결정번호	제 호	결정일:
결정주문		

보상대상자	성명:	생년월일:
	주소:	

신청인 (신청인대표자)	성명:	생년월일:
	주소:	
	보상대상자와의 관계: 의	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

대리인 (선임한 경우)	성명:	생년월일:
	연락처	전화번호: 휴대전화번호:

지급계좌	예금주:	은행명:
	계좌번호:	청구금액: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내수면가두리양식어업손실보상대책위원회

귀중

첨부서류	1. 신청인(신청인대표자)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한 경우에 한정합니다) 1부 2. 신청인(신청인대표자)의 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
------	--